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덕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소송중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09호, 2023. 6. 20. 공포, 2023. 12. 2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

- 1) 법 개정으로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해당 제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사실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게 하고,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른 조정 결과가 나오면 분쟁조정협의회가 그 즉시 수소법원에 그 결과를 통지하게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진행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9. 26. ~ 11. 3.) 예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분쟁조정의 종료사유 등)”을 “(분쟁조정의 종료사유)”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분쟁조정의 종료사유) 법 제20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경우
2. 분쟁의 성격상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신청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로 2회 이상 조정신청을 한 경우
5. 신청인이 이미 각하되거나 종료된 분쟁조정과 동일한 사안을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그 사안을 협의회에 조정 의뢰한 경우

6.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11조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의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대리점이 조정절차를 담당할 다른 협의회를 선택하는 경우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소제기 등의 통지) ①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신청 전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신청한 경우 지체 없이 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하거나 소 제기 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1.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

2. 분쟁조정 신청일

3.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③ 협의회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된 경우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진행한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조정신청을 각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수소법원에 알

려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분쟁조정의 종료사유 등)	제13조(분쟁조정의 종료사유) 법
① 법 제20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0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경우	1.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경우
2. 분쟁의 성격상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2. 분쟁의 성격상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3. 신청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 을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 을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신청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 하여 동일한 취지로 2회 이상 조정신청을 한 경우	4. 신청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 하여 동일한 취지로 2회 이상 조정신청을 한 경우
5. 신청인이 이미 각하되거나 종료된 분쟁조정과 동일한 사 안을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 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5. 신청인이 이미 각하되거나 종료된 분쟁조정과 동일한 사 안을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 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그 사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그 사
안을 협의회에 조정 의뢰한
경우

6.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11조에 따른 분
쟁조정신청의 보완을 하지 아
니한 경우

7.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대리
점이 조정절차를 담당할 다른
협의회를 선택하는 경우

②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신청
전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신청한 경우 지체 없이
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안을 협의회에 조정 의뢰한
경우

6.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11조에 따른 분
쟁조정신청의 보완을 하지 아
니한 경우

7.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대리
점이 조정절차를 담당할 다른
협의회를 선택하는 경우

제13조의2(소제기 등의 통지) ①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신청 전
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
기하거나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
지한 경우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신청한 경우 지체
없이 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
다.

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분쟁
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하거나 소 제기 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1.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

2. 분쟁조정 신청일

3.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③ 협의회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된 경우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진행한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조정신청을 각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4962